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용호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8573

발의연월일: 2021. 3. 5.

발 의 자:이용호·김민철·김영호

남인순 · 서범수 · 오영환

용혜인 • 이상헌 • 이용빈

이은주 · 허종식 의원

(119]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소득수준에 따라 본인이 연간 부담하는 본인일부부담금의 총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그 초과 금액을 부담하도록 하는 본인부담상한제를 시행하고 있음.

그런데 본인부담상한제에 따른 환급금이 지급되기까지 최대 1년의 시차가 발생함에 따라, 중증·희귀질환 환자의 경우 막대한 의료비 부 담을 호소하거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치료를 포기하는 사례가 발 생하고 있음.

이에 소득수준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국민건 강보험 가입자가 공단에 해당 연도의 본인부담상한액 통보 및 본인일 부부담금 초과 금액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초과 금액을 공단으 로부터 지체 없이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, 과도한 의료비로 인 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된 공적보험의 기능을 보다 강화 하려는 것임(안 제44조).

법률 제 호

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국민건강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4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5항(종전의 제4항) 중 "방법 및 제3항"을 "방법, 제3항"으로, "설정"을 "설정 및 제4항에 따른 본인부담상한액 통보와 초과 금액 즉시 지급방법"으로 한다.

④ 공단은 요양급여를 받는 자로서 가입자의 소득수준 등이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가 요청하는 경우 제2항에 따라 정하여진 해당 연도 본인부담상한액을 통보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요 양급여를 받는 자는 해당 연도에 통보받은 금액을 초과하는 본인일 부부담금이 발생하면 공단이 이를 즉시 지급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 며, 공단은 지체 없이 해당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정 혅 행 개 아 제44조(비용의 일부부담) ① ~ 제44조(비용의 일부부담) ① ~ ③ (생략) ③ (현행과 같음) ④ 공단은 요양급여를 받는 자 <신 설> 로서 가입자의 소득수준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가 요청하는 경우 제2항에 따라 정하여진 해당 연도 본인부담상한액을 통보하 여야 한다. 이 경우 요양급여를 받는 자는 해당 연도에 통보받 은 금액을 초과하는 본인일부 부담금이 발생하면 공단이 이 를 즉시 지급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, 공단은 지체 없이 해당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. ④ 제2항에 따른 본인일부부담 금 총액 산정 방법, 본인부담상 한액을 넘는 금액의 지급 방법 및 제3항에 따른 가입자의 소 제3항----득수준 등에 따른 본인부담상 한액 설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-----설정 및 제4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본인부담상한액 통보와 초과 금 액 즉시 지급 방법-----

| • |
|---|